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중 “제13조 규정에 의한 열을 발생하거나 화재발생우려가 있는 설비 및 기구의 위치.구조와 관리의기준”을 “제13조 규정에 의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구조 및 불을 사용하는 기준”으로 하고, “법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의한 임시저장 취급장소, 법 제16조제2항의 농예용 또는 어패류양식장용 난방시설을 위한 위험물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법제 15조제2항의 단서,제3항의규정에 의한 위험물임시저장 및 취급의 기준과 이에 대한 위치.구조.설비, 법 제17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의한 주택의 난방사설을 위하여나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을 위한 위험물제조소 등의 시설기준”으로한다

제2장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를 “화재의 예방”으로한다

제1절 을 삭제한다

제2조중 “(열을 발생하는 설비 및 기구)”를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로, 제1항중 “열을 발생하는 설비 및 기구라함은”을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라 함은”으로하고, 제8호중 “유효한 차폐장치”을 “가리거나 덮개를”로, 제11호 다목중 “오물”을 “먼지와 쓰레기등 이물질”로, 제12호중 “부설하여야 한다”를 “설비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주방설비) 조리를 목적으로 하여 사용하는 렌지.화덕 등의 설비의 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닥트 및 후드(이하“배기닥트등”이라한다)는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 불연 재료로 만들 것
2. 배기닥트 등의 접속은 후렌지 접속. 용접등으로 하고 기밀성이 있도록 할 것.
3. 배기닥트등은 건축물 등의 가연성 부분 및 가연성 물품과의 사이에 1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보유할 것, 다만 금속이외의 불연재료로 유효하게 피복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4. 유지를 포함한 증기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주방시설은 배기중에 포함된 유지 등의 부착성분을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리스휠타 등의 장치를 설치할 것.

제4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난로) ①난로의 연통 및 연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할 것

1. 연통의 구조 또는 재질에 따라 지지를 지선 또는 철구조물등으로 고정할 것
2. 연통의 옥상 돌출부에는 지붕면으로 부터 수직거리를 0.6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연통의 높이는 그 선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이내에 건축물의 처마가 있을경우에는 그 처마로부터 0.6미터이상 높게할 것
4. 금속재 또는 불연재의 연통은 지붕속. 반자속. 바닥밑에 있는 부분을 금속 이외의 불연재료로 방화상 유효하게 피복할 것
5. 금속재 또는 석면재의 연통은 목재 그밖의 가연재료로부터 0.15 미터이상의 거리를 보유하여 설치할 것 다만 두께가 0.1미터이상의 금속외에 불연재료로 피복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가연성의 벽. 바닥. 반자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구멍돌을 삽입하거나 단열재료로 유효하게 피복할것

②호텔. 시장. 백화점.상가. 유흥주점. 지하의 위생점객업소. 소극장.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단란주점등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난로(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난로에 한한다) 이외에는 사용할 수없다

1. 난로에 받침대를 설치. 고정시켜 쉽게 이동 또는 전도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2. 난로의 연소기(본체)와 연료통은 상호 5미터이상 거리를 둘 것 다만 연료통이 벽 또는 격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

제10조 내지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7조”를 “제10조”로, “제18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9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항중 “인화성 또는 폭발성의 물품 그 밖의 가연물의 부근에서는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등 안전책임자 (이하 “안전책임자”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인화성 또는 폭발성의 물품 그 밖의 가연물의 부근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 되는 작업을 하도록하여서는 안된다”로 하고 제2항중 “가연성의 증기”를 “안전책임자는 가연성의 증기”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3절을 삭제한다

제21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항 제1호중 “관람집회시설의”를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의”로, 제2호중 “시장의”를 “판매시설의”로, 제2항중 “제1항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제1항의 장소에서 객석의 전면 기타 보기쉬운 곳에 ‘금연’ ‘화기엄금’ 또는 ‘위험물품 반입금지’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의 색은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하여야 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 관계인은 당해 장소에 “금연구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른다”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2조를 “제14조”로하고, “제23조”를 “제15조”로 하며,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소방의 날 행사) ① 소방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의 날 행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행정에 관련한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2. 불조심 강조의 달 설정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사에 있어서 11월 9일이 법정 공휴일이 되는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하고 행사의 성격상 기일을 요하는 사항은 필요한 날을 정하여 행할 수 있다

제4절을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3장 “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상의 기준”을 “위험물의 취급”으로 한다

제1절을 삭제한다

제25조 를 “제17조”로 하고“(주택의 난방용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위험물제조소 등의 취급 및 시설 기준)”으로 한다

제26조 를 “제18조”로 하고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 난방시설에 쓰이는 위험물 저장소)“를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 난방에 쓰이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으로 하며, 제7항중 “제25조의 제2항에” 를 “제17조 제2항에“로, 제9항중 “제25조제4항에”를 “제17 조제4항에“로 하며, 제10항중“제28조의” 를 “제20조의”로 한다

제27조를 “제19조”로 한다

제2절을 삭제한다

제28조를 “제20조”로 하고 “(공통기준)”을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으로 하며 22호 다음에 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23.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수동식소화기를 비치할것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절을 삭제한다

제31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호중 “구분하여”를 “높이 9미터이하로 구분하여”로 한다

제4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화재의 경계

제1절을 삭제한다

제32조 내지 38조를 삭제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화재위험경보 발령중의 불의 사용제한) 화재에 관한 경보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불의 사용을 제한할수 있다

1. 산림.평야등에서 불의 사용
2. 연화의 사용
3. 옥외에서의 불장난 또는 분화
4. 인화성 또는 폭발성의 물품 그 밖의 가연물의 부근에서 흡연 및 불의 사용

5. 잔화(담배꽁초포함). 재등 의 방치
6. 창문 등을 개방한 채로 옥내에서 하는 불의 사용
7. 기타 화재예방상 특히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불의 사용

제5장 보 칙

제39조를 “제23조”로 하고 동조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소방서장”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하며, 동조제1호중 “화재라고 오인할만한 연기”를 “약제 및 화학제품등을 사용 하여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연기”로,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40조를 “제24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화재예방을 위한 시정보완명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조 내지 제11조(제5조를 제외한다)의 사항은 1차에 한하여 시정보완명령을 할수있다 이 경우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절차 및 방법등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2조를 “제25조”로 한다

제6장 별 칙

제43조를 “제26조”로 하고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제한을 위반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